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0일
북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단체 이용자 등의 실내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 마련(안 제3조제4호 신설)
- 2)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및 대상 확대(안 별표 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실내놀이터 이용에 따른 돌봄 서비스 근거를 추가하고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확대하고자 개정함.

2) 주요 내용

가)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 마련(안 제3조제4호 신설)

-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

나)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및 대상 확대(안 별표 2)

구 분	추 가 대 상	비고
전액 감면	6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인솔 성인	
50% 감면	1.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이터 이용 시	

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